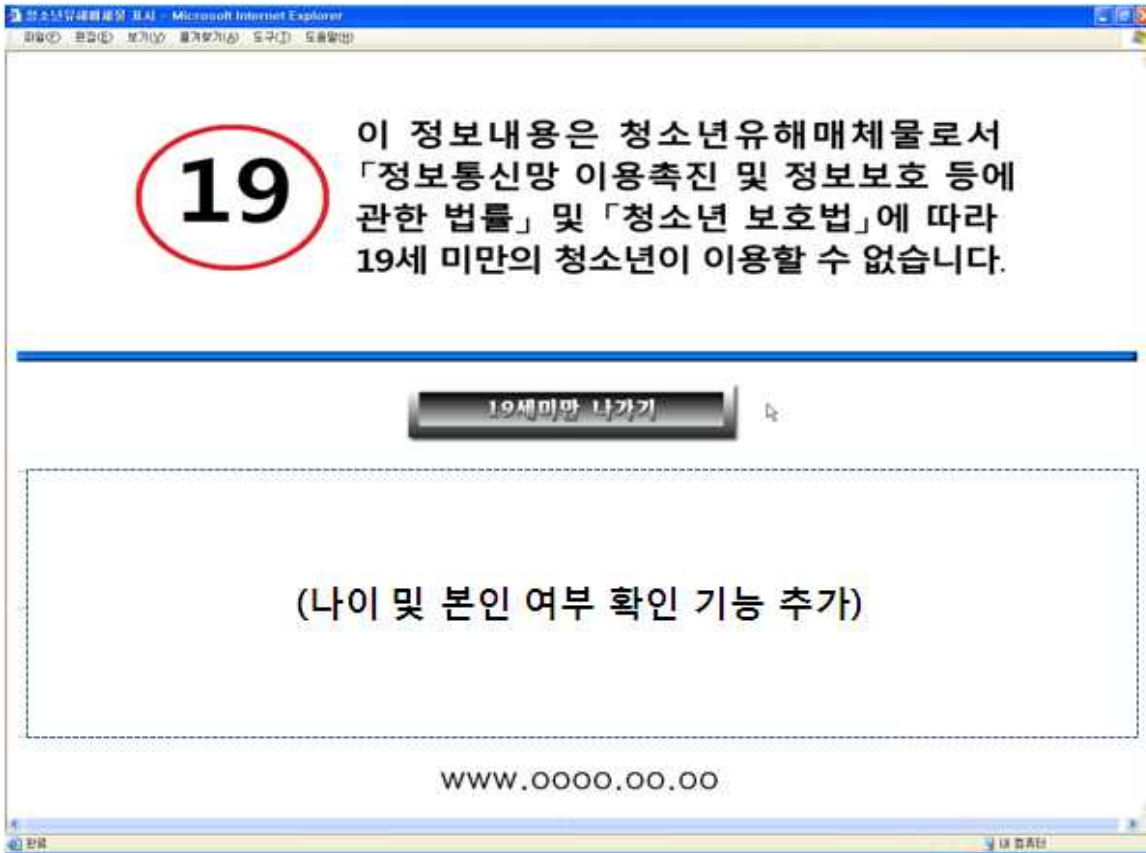


[별표]



1. 위 그림은 별도의 화면으로 표시하되, 백색바탕의 화면 전체의 크기로 한다.
2.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는 화면 전체의 1/3 이상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한다.
3. 기타 문자·영상·음향·부호 등은 표시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의 사항은 유해로고와 유해 문구 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.

가. 19세 미만 이용자 나가기 기능

나. 「청소년 보호법 시행령」 제17조에 따른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기능

- ①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- ② 공인인증서
- ③ 아이핀
- ④ 공공아이핀
- ⑤ 신용카드
- ⑥ 휴대전화(문자, 음성 자동응답 등)

다.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명의 URL